##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호 5972 제안연월일: 2024. 11. .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 과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2479호)	조경태의원	2024.8.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2024.9.25.) 상정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4007호)	정부 제출	2024.9.13.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2024.11.12.) 상정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 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4. 11. 20.) 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11. 21.) 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어선건조·개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불법 어선건조·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등록취소나 벌칙·과태료 등 제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어선건조·개조업자가 어선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발주받아 이를 건조 또는 개조한 경우 허가권자가 건조·개조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어선건조·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9조의2).
- 나. 어선건조·개조업자 및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 다. 어선건조·개조업자가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발주받 아 건조·개조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선의 건조·개조 중 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 라. 어선건조·개조업자가 어선 검사, 건조검사를 받은 어선에 선체· 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 등)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 또는 어선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행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수리를 하는 사업(이하 "어선건조·개조업"이라 한다)을 하려 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건조·개조업자"라 한다) 는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의2(어선건조·개조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건조·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

- 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2.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3.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개조업을 한 경우
-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해당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경우
- 5.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 제9조의3(어선건조·개조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건조·개조업자에 대하여 어선의 개발, 시설의 이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건조·개조 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받아 건조·개조하는 자"를 "어선건조·개조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 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선의 건조·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 1. 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건조·개조업자가 허가사항을 위 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 2. 어선건조·개조업자가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 하거나 개조한 경우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어선건조·개조업자는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해당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의 취소

1의2. 제10조에 따른 건조·개조허가의 취소. 어선의 건조·개조의 중

지 명령 및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 명령 제4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개조업을 한 자

제4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 제5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개 조업을 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 및 허가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법 시행 당시 어선건조·개조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개조업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어선건조·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등록 전에도 제10조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는 어선건조·개조업자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9조(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 등)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 또는 어선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행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리를 하는 사업(이하 "어선건조·개조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건조·개조업자"라한다)는 등록한사항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 제9조의2(어선건조·개조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 관은 어선건조·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2.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3.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 ·개조업을 한 경우
  -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 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 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 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 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해 당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

<신 설>

치한 경우

- 5.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을 할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의3(어선건조·개조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선건조·개조업자에 대하여 어선의 개발, 시설의 이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건조·개조 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 는 지역을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 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해양 수산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 장은 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자 나 <u>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받</u> <u>아 건조·개조하는 자</u>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조·개조허가를 취 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 야 한다.

1.·2.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조·개조 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받아 건조·개조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의 건조·개조 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절	<u></u>	등	에	관	하여	뉙	필.	요 현	<u>}</u> /	<b>\</b> } र	항
	은	해	양	수	<u></u> 산부	L궝	<u>0</u>	로_	정호	한디	<u>}.</u>	
제	103	조(	허)	가으	의 2	취소		등)	1			
		- <u>어</u>	선	건.	조•	개결	돈 안	감				
			•									

- 1.·2. (현행과 같음)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선의 건조·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 1. 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건조·개조업자가 허가사 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 하거나 개조한 경우
  - 2. 어선건조·개조업자가 건조· 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 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 우

태유지) (생략)

<신 설>

제3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건조·개조허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 가의 취소, 어선의 건조·개조 의 중지 명령 및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 명령 <신 설>

2. ~ 4. (생 략)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3조(벌칙) -----

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 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 태유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 분과 같음)

> ② 어선건조ㆍ개조업자는 제21 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별도 건조검사를 받은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청문) -----

건조·개조업 등록의 취소

1의2. 제10조에 따른 건조·개조 허가의 취소, 어선의 건조·개 조의 중지 명령 및 어선 또 는 어선설비의 제거 명령 2. ~ 4. (현행과 같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신 설>

2.·3. (생략)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신 설>

3. ~ 10. (생략)

② (생 략)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신 설>

1. (현행과 같음)
1의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을 하
지 아니하고 어선건조·개조
업을 한 자
2.·3. (현행과 같음)
제44조(벌칙) ①
1 0 (=1 =1 =1 0)
1.·2. (현행과 같음)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u>방법으로 제9조제1항 또는</u>
제3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
조업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
록을 한 자
3.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과태료) ①
1. ~ 4. (현행과 같음)
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
	건조·개조업을 한 자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